나. 포스코 상대 손해배상청구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정본입니다.

판 결

2007. 8. 30.

법원주사 이 현 미

사 건	2006가단165504 위자료 등
원 고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남구 괴동 1
	송달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대표이사 이구택, 윤석만, 정준양, 이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변 론 종 결	2007. 7. 19.
판 결 선 고	2007. 8. 23.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www.scourt.go.kr

이 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유족들로서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 진상 규명 및 권익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회원들인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한 청구권 자금을 받았으면 원고들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에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기업과 제휴할 때에는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기업인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아래에서 '신일본제철'이라 한다)와 기술제휴를 하고 주식까지 교차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신일본제철의 주주로서 일제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법익 침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배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일본제철의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발생한 법익 침해 상태를 방조·조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및 조리상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www.ecourt.go.kr

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1호증 내지 갑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 주장과 같은 어떠한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 _____

송달일자	사 무 장	사무국장	담당변호사
09. 1. 7			
정일자			
09. 1. 23			

2009. 01. 09.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민 사 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 건 2007나90694 위자료 등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23. 선고 2006가단 165504 판결)

원고, 항소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남구 괴동 1

송달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대표이사 이구택, 윤석만, 정준양, 이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오정한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원고들은 이 사건 항소를 모두 취하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비롯하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모두 종결될 경우, 피고 회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통상적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해자 및 유족 등을 위한 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거나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등 피고가 정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원고들은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피고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아님을 인정하고, 향후 피고 또는 그 임직원들을 상대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쌍방은 언론을 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상호 비방 또는 비난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원고들은 일제 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군인, 군속 또는 노무자로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 또는 그들의 유족들로서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 진상 규명 및 권익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 회원들인바, 대한민국은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한 청구권 자금을 받았으면 원고들과 같이 일본으로부터 강제징용,

임금 미지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금으로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대한민국과 공모하여 피고를 설립하는 데에 청구권자금을 사용하는 등으로 청구권자금이 정당하게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금으로 설립된 피고로서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기업과 제휴할 때에는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조한 기업인 '일본제철'을 승계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아래에서 '신일본제철'이라 한다)와 기술제휴를 하고 주식까지 교차 보유하고 있으며, 피고는 신일본제철의 주주로서 일제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법익 침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배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일본제철의 주주총회에서 발언을 하며, 일본 제국주의 침략전쟁에서 발생한 법익 침해 상태를 방조·조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및 조리상의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 1. 8.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김동진

판사 이숙연

※ 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법 원 용

2009. 01. 23

기일	

주심	가	나	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영수
2008. . .

사 건 **2007 나 90694** 위자료 등

원 고(항 소 인) 김인성 외 **99**

피 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

2009. 1.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섭, 이 상민

장 영기, 오 정한

담당변호사 오 정 한 (528-5224)

담당사무장 송무 1팀 (528-5291)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 5부 귀중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07 나 90694** 위자료등
원고(항 소 인)	김인성 외 99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남구 괴동 1 송달장소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대표이사 이구택, 윤석만, 정준양, 이윤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섭, 이 상민, 장 영기, 오 정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4-31 섬유센터빌딩 12층 <☞ 135-713>
(전화: 528-5200, 팩스: 528-5296, 전자우편: lit-mail@yulchon.com)

위 사건에 관하여 2009. 1. 8. 동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피항소인)는 위 결정에 불복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26조 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피고(피항소인)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정본을 2009. 1. 12. 송달받았습니다].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첨 부 서 류

1. 이의신청서 부본 1부

2009. 1.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 섭

담당변호사 이 상 민

담당변호사 장 영 기

담당변호사 오 정 한

서울고등법원 민사 제5부 귀중

YULCHON 律村 YULCHON
법무법인 율촌
서울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우편번호 135-713
TEL 02 528 5200 송무팀FAX 02 528 5296
lit-mail@yulchon.com www.yulchon.com

참 고 서 면

사 건 : 2007 나 90694호 위자료 청구

원 고(항소인) : 김인성외 98

피 고(피항소인) : ㈜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항소인)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참고서면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피항소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09.1.22. 귀 원의 조정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피고가 귀 원의 조정결정이 가지는 역사적 무게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앞장을 서겠다는 반헌법적 행위로 우리 법원에 의해 응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귀 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예를 들어 마이니치 신문에는 1면과 다른 면에 대서 특필하여 귀 원의 조정의 역사적 무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이 포스코 재판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피고가 위 원의 권고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일본의 책임있는 기업에게도 그 전쟁책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 결국 한일간에 화해가 초래될 수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양식있는 국민이라면 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일본정부가 한국 군사정권의 약점을 이용하여 단 한마디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도 없이,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지불하지 않고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러한 것은 2007.4.27. 일본의 최고재판소에서도 법리적으로 정부의 배상포기가 일반 국민의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자들의 자발적 이행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기에, 포스코와 같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일제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면 일본의 전쟁책임 기업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일간에 현안으로 전면에 대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시취지에 따른 이행여부가 일본에서 더욱 현안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귀 원의 조정에 대해서는 원고(항소인,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도 법리적으로 완전히 승복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귀 원의 용기있는 결정에 경의를 표하는 차원에서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부언하면 귀 원의 조정은 피고에 대한 청구 원인 중 원고들 주장의 핵심사유, 특히 피고에 대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책임에 대해 규범적 판단을 회피하고 있어 법리적으로 원고들은 승복을 하지 못합니다.

본건은 피고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그 청구원인의 핵심은 전범기업의 주주로서 우리 헌법질

서상 피고가 어떤 규범적 의무를 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범적 의무가 인정이 되면 결국 일본내 전쟁 책임기업들의 주주들에 대한 행위를 일본 최고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강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귀 원의 조정에 대해 이의를 하면서 '전후보상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지 자신들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는 얼토 당토 않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전후 보상을 요구한다면 위 논리가 일응 타당성이 있을 지 모르나 원고는 보상이 아니라 전범기업의 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우리 헌법 질서상의 규범적 의무를 묻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건 소송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 본 건과 관련하여 서울지방법원은 2006 가합 42288호 2007 가합 40135호(병합)판결로 피고의 행위에 의해 원고들이 이를 패씸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피고의 행위에 의해 원고들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음은 간접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의 성립여부이고 우리 헌법상 규범의무를 깊이 고려하면 이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5.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와 명예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는 행위는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원고들의 권리이며 그 권리 행사에 대해 이를 배려하고 협조할 의무가 국가기관 및 국민에게 있고 청구권 자금으로 설립

된 피고는 더욱 위 의무를 져야 함에도 소외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배려 의무의 이행 정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이를 해태한 피고에 대해 규범적 의무를 인정함으로 인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시취지를 현실화하여 결국 한일 양국의 사법부가 인권보루로서 그 고유의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2009. 1.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고등법원 귀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33-2 범어빌딩 4층 대표전화. (053) 743-0031 FAX. (053) 753-6963

소 장

원 고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위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봉태, 이춘희, 오충현, 송해익,

김인석, 주경태, 임성우, 권영규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포항시 괴동동 1

대표이사 이구택, 윤석만, 정준양, 이윤

송달장소 :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6 (서울지점)

위자료청구등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1,000,000원및 위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들은 태평양전쟁희생자 및 그 유족들이며 피해자 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연합체로 일제 피해자들의 피해진상규명및 권익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의 회원들입니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 침략 전쟁에 군인, 군속 혹은 노무자로 동원되어 희생된 자들 및 그 유족들로 가해국인 일본 및 일본 기업에 대해 미수금 채권으로 비롯한 채권 기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이 1965. 6. 22. 일본과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도입된 소위 청구금 자금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2. 피고의 책임

(1) 소외 대한민국은 1965. 6. 22. 일본과 체결한 위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청구권 협정 제 2조 1.항에 의하면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과 양 체약국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 3.항에 의하면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및 그 국민의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하여 일본에서는 일본 법률 제 144호에 의해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재산권으로 청구권 협정 제 2조 3항의 재산, 권리, 이익에 해당하는 것은 1965년 6월 22일에 있어서 소멸한 것이 되고, 이에 대해 1965년 6월 22일 이후 그 권리에 의거한 주장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된 한국인의 권리 등에 대해 지난 2005. 8. 26. 발표된 한일회담문서공개 후속대책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등을 제외한 통상적거래관계에 기인한 민사적, 재정적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그 법적 효력에 대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대한민국은 원고들에 대해 통상적 거래관계에 기인한 민사적, 재정적 채권 채무에 대해 그 신고조차 제대로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을 현재까지 한 바가 없습니다.

피고는 피고회사를 소개하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조상들의 피의 대가를 한 푼이라도 낭비해서는 안된다는 사명감 하나로 똘똘 뭉친 임직원들은 '룸멜하우스'로 불리는 건설사무소에서 새우잠을 자고 모래 섞인 밥을 먹으며 제철입국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라는 문구에서 보듯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희생자의 피의 대가로 설립된 사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알고 있음에도 소외 대한민국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에 편승하여 현재까지 원고들의 몫을 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2) 뿐만 아니라, 피고는 삼일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기업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고, 더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희생을 통해 설립되고, 성장하였기에 원고들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가 법과 상식에 따라 제대로 해결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고 해석함에 타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경영상의 이유로 관련 기업과 제휴하고 경영 전략을 세움에 있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다양한 선택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법제상 그 제휴의 대상과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사회상규및 조리상으로 그 한계를 가진다 할 것이고, 특히 일제의 침략 전쟁시에 동조한 기업과 제휴할 때에는 우리 헌법 정신과 피해자들의 입장과 충분히 고려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일제 침략시 수많은 한국인을 강제동원하고서도 전후 60년이 넘는 현재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1995년부터는 재판정에서 그 책임이 추궁 당하고 있는 소외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를 하여 오히려 수익 확장을 도모하여 주고 있어 2001. 3. 피해자들로부터 피고회사 서울사무소 앞에서 "제휴보다 과거 청산이 우선입니다."라는 항의를 받고, 이어 언론을 통하여 거듭 피고가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도록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일체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는 피고가 위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지분 2.2%, 보유하는 대신 위 신일본제철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회사의 지분을 3.32% 교차 보유하게 하는 등 유착을 강화하여 사실상 피고 스스로 위 회사의 책임을 일정 정도 져야 할 입장으로 전환하여 위 회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의 추궁을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 아울러, 최근인 2005. 8. 26. 한일수교회담문서가 전면 공개 됨에 따라 당시 소외 대한민국은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생존자 1인당 200불로 계산하여 도합 364,000,000불의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여 이를 기초로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받아 왔음이 들어 나기에 이르러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명백히 밝혀 지자, 이에 원고들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의 내역과 그 사용처를 기초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 지난 2006. 4. 피고 회사에 대해 청구권 자금의 유입및 사용 내역, 그리고 반환 경위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또 다른 정신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 행위에 대해 원고들에게 우선 적어도 청구취지 금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어서 본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 1호증의 1내지 2	청구권자금백서표지및 내용
1. 갑 제 2호증	인터넷검색((주)포스코)
1. 갑 제 3호증	사진(포항제철 서울사무소 집회모습)
1. 갑 제 4호증의 1	신문기사(2002. 11. 26.자)
1. 갑 제 4호증의 2	인터넷신문검색(2005. 12. 14.자)
1. 갑 제 4호증의 3	인터넷신문검색(2006. 4. 17.자 출자관계)
1. 갑 제 5호증	한일협정으로 일본에 들어온 유무상 자금사용에 관한 질의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영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006. 5. .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이 춘 희

오 충 현

송 해 익

김 인 석

주 경 태

임 성 우

권 영 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SAMIL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Ref. NO. 003-06-012703

답 변 서

사 건 **2006 가합 42288 위자료 등**

원 고 **여 운 택 외 139**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의 제목이 "위자료 청구 등"이어서 일응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현재까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의 어떠한 행위가 어떠한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이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청구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나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이 있기 이전에는 피고로서는 일단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합니다.

다만, 소장에서 원고들은 "**2006. 4.경 피고에게 청구권 자금의 유입 및 사용내역, 그리고 반환경위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는데도 피고가 원고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피고측에서는 "강제동원진상규명시민연대"의 대일청구권자금 사용 및 반환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에 따라 지난 2006. 4. 25.경 이미 위 단체의 사무국장에게 대일청구권자금 관련 설명자료(을 제1호증)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대일청구권자금 관련 설명자료

2006. 7.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 섭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담당변호사 장 영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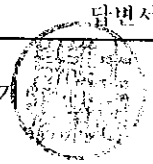

담당변호사 오 정 [illegible]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4부 귀중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준 비 서 면

사 건 : 2006 가합 42288호 위자료청구

원 고 : 여운택외 139인

피 고 : ㈜ 포스코

위 사건에 대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건 소송의 의미

본 위자료 청구 사건의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본건 소송의 의미에 대해 간략히 진술하고자 합니다.

(1)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우선 최근인 2005.8.26.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의 전면 공개에 이르기 전의 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모두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된 희생자 본인 및 희생자들의 유족들입니다. 원고들이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으로 인하여 받은 피해에 대하여는 1945.8.15.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됨으로 인하여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이 당연히 배상을 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 우리 나라가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체결 당사국이 되지 못하여 위 강화조약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위 샌프란시스

코강화조약 제4조에 의해 일본과 특별 협정을 통해 영토 분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냉전과 남북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일제 시대 피해에 대해 일본측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하다가 한국 전쟁의 발발을 계기로 한일간의 관계 정상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배경으로 하여 결국 혼란의 와중에서 일본과 교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침략에 대해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합리화하는 일본측의 태도로 인하여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5.16 쿠데타를 통해 성립한 군사정권의 주도로 1965.6.22. 한일기본관계조약 및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소위 한일청구권협정)이 체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위 협정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 개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자는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본측으로부터 경제협력자금을 수령하는 대신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버렸고, 위 경제협력자금은 제공의 취지에 따라 대부분 피고와 같은 기업들에 의해 사용되어 결국 원고와 같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정당한 배상 및 보상이 가해자측 혹은 한국측으로부터 어느 쪽이나 이루어 지지 않은 채 원고들은 해방 후 60년이 넘도록 보호의 사각 지대에 놓여 방치되어 있습니다.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이 일본의 법정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하는지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인권 침해는 없는 것인데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을 매개로 하여 일본과 한국 정부는 모두 그 법적 책임을 부정하여 왔다가 결국 극히 최근에 이르러 위 한일청구권협정이 전면 공개되어 일제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의 존재 및 그 범위 여부가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2) 한일청구권협정 공개 후 양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 해인 2005.8.26.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전면 공개하면서 법적 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한일 양국간 민사적, 재정적 채권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해방 전 일본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었던 한국 정부와 국민의 민사적 재산권"을 일본이 자국 내 조치를 통하여 소멸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청구권 협정에서 합의하였으므로 협정 체결 직후 제정된 일본 법률에서 소멸시킨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동의하여 주었으므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75년 당시 정부가 보상 법률을 제정하여 재산권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였으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고조차 받지 않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강제 동원 피해자의 미수금은 현재 피해자들이 가장 크게 정부의 도덕성을 문제 삼고 있고, 당시 정부가 확인 노력도 하지 않고 증빙 자료 미비를 이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구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과정의 가혹 행위 등 당시 일본 정부, 군

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해방 전 일본 헌법상 개인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기에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국민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며, 진상이 규명되는 경우 한국 정부도 일본 정부에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제 동원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강제 동원이 해방 전 일본 법에 의한 합법 행위였으므로 강제성 자체를 부인하면서 한국민은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하였고, 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 주장의 부당성을 반박하였으나 일본측이 이를 강력히 부정하여 결국 한국 정부는 강제 동원 자체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대신,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고통 받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요구가 양국간 무상 자금 산정에 반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지만 피해자 개인들이 "강제 동원은 일제의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총체적 피해"라는 법적 논거로 일본측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책임과 관련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자금에 강제 동원 피해 보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상을 책임은 없으나 수령한 무상 자금중 상당 금액을 강제 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법리적 해석에 따라 현재 "일제 강점 하 국외 강제 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에 의해 입법 예고 되어 있

는데 사망자에게 금 2,000만원의 위로금을, 부상자에게는 금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위로금을, 미수금에 대해 물가 상승률등을 고려하여 구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위 위로금의 금액이 너무나 미흡하고, 미수금의 배율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히 강하여 피해자들을 제대로 설득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률안에는 생존자 및 생환 사망자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생환자들 및 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한일청구권협정의 전면 공개에 따라 밝혀진 우리 정부의 당시 협상의 진실과 정부가 밝힌 위 법리 해석에 따라 우리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져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소멸된 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는 헌법의 정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의칙상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주장을 하지 못하는 강제 동원과 관련된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무상 자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를 위해 실제 사용하도록 요구를 하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주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총액과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일본 정부에 피해자 몫으로 주장한 부분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돌려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만약 피해자들의 몫으로 정부로부터 출연된 몫이 적다면 여전히 일본 정부와 기업에 책임이 남아 있는 부분을 통하여 개인의 청구권을 주장하여 그 몫을 받아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한편,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자극 받아 일본에서도 한일청구권협정을 공개하여 일본 정부가 그 당시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였고, 그 피해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몫을 제공하였는지를 밝혀 결국 피해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이 대두하여 지난 2006.4.25.에는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한일청구권협정문서의 공개를 청구하는 기자 회견과 청구서 제출이 이루어 졌습니다.

(3) 최근의 양국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관련하여

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는 불행한 역사를 청산하고 한일간에 바람직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및 분단의 어부지리를 이용하여 일본측은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현재까지 지고 있지 않으며 그 일본측의 방어벽이 되고 있는 것이 소위 한일청구권협정 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부간에 맺은 협정에 의해 법주체성이 다른 개인의 청구권이 과연 소멸될 수 있는가 그 법리상에도 많은 의문이 있고, 가사 일정 부분 양국 정부간에 처리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소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원고들의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었는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서 최종적인 해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문서를 전면공개하여 법적 효력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려 하는 것은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습니다만 정말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고령을 생각할 때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편승하여 원고들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문제에 여전히 책임이 남아 있는 일본 정부 및 기업들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 않고 있습니다.

2.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한 소송의 경과 상황과 독일과의 비교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전신인 일본제철은 일제강점기 약 1만명의 조선인 징용자들을 강제 동원하여 전시하 부족한 노동력의 확충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들을 열악한 환경하에서 자유를 빼앗은 채 강제 노역을 시켰던 회사입니다. 당시 일본제철은 한국인 노동자들을 가족의 품을 떠나 전시하에 놓여 있던 이국의 일본땅으로 내몰았으며, 임금의 전부 또는 상당액을 강제로 저축시켰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청년들이 죽음을 감수하며 도주를 감행 하였으며 충분한 안전 조치도 갖추어 지지 못한 현장에서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공습으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으며, 해방 후 혼란기에 극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이들 피해자들은 강제노동의 후유증에 고통 받기도 하였으며, 사망자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더불어 생활의 전선에 내몰려 충분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한스러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난 95.9.에 11명의 유족이 동경지방재판소에 제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울러 97.12. 에는 생존자 2명이 오사카지방재판소에 제소를 하였습니다. 유족 11명의 소송에 대해 신일본제철주식회사측과 지난 97년 1인당 200만 엔의 화해금을 지급하고 위령 사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화해가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미불 임금의 지불 및 손해배상 청구 재판은 2001.3.27.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패소, 2002.11.19.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패소, 2003.10.19. 최고재판소에서 패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위 재판이 진행 중 2000.4.27. 및 2002.12.24. 일본제철에서 징용당한 피해자들의 공탁금을 반환 받자는 소송도 계속 제소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 중 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에서의 패소 판결에 자극을 받아 한국 법원에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이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강제 동원을 한 기업은 일본의 기업만이 아닙니다. 독일의 기업들도 많은 피해자들을 동원하여 나치 국가의 중대한 불법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1999. 12. 17. 당시 슈레더 총리가 베를린에서 기자 회견을 하여 나치 통치하에 강제 노동에 종사한 피해자들에 대해 연방, 주정부 및 기업이 총액 100억 마르크의 보상기금재단을 창설한다고 표명하고 2000. 7. 6. 법률로서 이를 성립시켰습니다. 즉 독일 정부와 기업들이 각 출연을 통해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라는 재단을 만들어 강제 동원 피해자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독일 기업들의 도덕성이 일본 기업들 보다 우월하여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기업들에 의해 강제 동원 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지난한 재판 투쟁을 통해 이루어 졌습니다.
한국의 일제 피해자들이 최근 이룩한 성과를 기초로 일본 정부 및 기업들도 독일의 전후 처리의 예를 따라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 정의의 기본 요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한국에서도 지난 60년간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겨우 한일청구권협정이 작년에 공개되고 이제 책임 주체가 명확히 밝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건 소송을 통해 피고와 같은 기업들이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솔선수범함으로 인해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비롯한 책임 있는 일본 기업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어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피해자들의 문제가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

3.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재판부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

현재 우리 정부가 입법 예고를 한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정부간에 가장 큰 대립의 점은 총액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정부의 의도에 대해 불신을 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몫을 돌려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한국 정부 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와 함께 피해자 몫으로 사용되어야 할 청구권 자금을 함께 유용한 기업들에게 있어 서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하여 전후 처음으로 결국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기업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하고 있습니다.

피고 ㈜ 포스코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청구권 자금을 유용한 대표적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까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역할을 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유착하여 피해자에게 새로운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그 동안 원고들로부터 비난되어 오다가 결국 본건 피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소송 지휘를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우선 피고 ㈜ 포스코가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내역과 만약 반환하였다면 반환한 내역에 대해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본건 재판의 핵심으로 피고 ㈜ 포스코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기술 제휴를 하고 지분을 상호 보유하게 된 경위 및 피해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감행하게 된 이사회의 회의 과정 등에 대한 자료가 확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고인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장기간의 법적 투쟁이 힘이 든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원고 대표자 몇 명에 대한 당사자 본인 신문 및 원고들의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투쟁을 하여 온 경위에 대한 신문 및 현재 계류중인 소송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의 채택이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기원합니다.

본건 소송을 계기로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법적 정의가 조속히 찾아 오기를 기원하면서 변론 전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2006. 7.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상대방용

2006. 09. 12

Ref. NO. 005-06-017617

준 비 서 면

사 건 2006 가합 42288 위자료 등

원 고 여 운 택 외 139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접수
No.
2006 0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다 음

1. 들어가며

피고는 답변서에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이 불명하니 청구원인을 특정해 줄 것으로 요청한 사실이 있었는데, 2006. 8. 22.자 준비절차기일에서 재판장님의 청구원인에 관한 석명에 대하여 원고측 소송대리인께서 분명히 "**첫째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돌아갈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하였고, 둘째 피고가 신일본제철과 제휴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이 모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가 대한민국 정부와 공모하여 원고들에게 돌아갈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한 사실, ② 피고가 신일본제철과 제휴한 사실 등이 모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아래에서는 이러한 주장의 부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피고가 정부와 공모하여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하였는지 여부

가. 한일청구권 자금 중 피고에 출자된 내역

피고측 "강제동원진상규명 시민연대"의 대일청구권자금 사용 및 반환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에 따라 지난 2006. 4. 25.경 이미 위 단체의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대일청구권자금 관련 설명자료(을 제1호증)에 따르면, 한일청구권 자금 총 5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중 1억 1,950만 달러가 피고에 투입되었는데, 그 중 무상자금 3,080만 달러는 정부의 출자금으로 대체되었고, 유상자금 8,870만 달러는 차관형식으로 도입되어 피고가 직접 상환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피고가 2000. 10. 4. 완전 민영화 되기까지 정부가 피고에 출자한 자금은 무상 청구권자금 121억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205억 원이고, 반면에 민영화 완료 이전까지 정부가 주주로서 현금배당 및 주식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실현한 금액은 총 3조 8,899억 원인데, 이를 민영화 시점인 2000년을 기준으로 현가를 환산해 보면 정부의 출자금은 4조 825억 원이고 정부가 이익을 실현한 금액은 6조 908억 원으로 정부가 회수한 금액이 출자금의 1.5배에 이르게 됩니다.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나. 원고 주장의 부당성

(1) 최초 공모의 현실적 불가능성

원고는 피고가 정부와 공모하여 한일청구권자금을 유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피고는 정부가 한일청구권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최초 투자 당시에는 아직 피고가 설립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피고가 정부와 공모한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한일청구권 자금의 성격

또한 현재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자금에 강제동원 피해보상금 성격이 포함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고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상할 책임은 없으나 수령한 무상자금 중 상당금액을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에 사용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2006. 5. 17.자 준비서면 참조)는 등 현재까지 한일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일청구권 자금을 원고들에게 분배하지 않고 피고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는 한일청구권 자금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그리고, 원고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간에 1965. 6. 22. 자로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된 문서들은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시초가 되어 공개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문서로서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도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최근까지도 한일청구권 협정과 그에 따른 청구권자금의 법적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사 우리 정부가 한일청구권자금을 원고들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에게 분배해 주지 않고 피고에 투자한 행위 자체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정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인식하고 이에 공모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가 신일본제철과 제휴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가. 피고가 민영화되기까지의 과정

(1) 민영화 추진 배경

1970년대까지만 하여도 대부분 국가의 철강업체들은 국영이거나 국민경제의 핵심 산업체로서 정부의 강력한 규제 아래 운영되어 왔으나,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 각국이 민영화와 탈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였고, 신자유주의 이념과 자유경쟁의 확산 등으로 공기업의 존재 기반이 약해진 유럽에서 먼저 영국의 브리티시스틸과 프랑스의 유지노사실로(Usinor Sacilor)가 민영화되었습니다. 브리티시스틸과 유지노사실로는 민영화 이후 대대적인 합리화 조치를 통하여 정부지분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고, 정부 특별주(Golden Share) 보유, 주식보유한도제한, 우호 주주그룹 형성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다각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안정경영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미 철강업체들도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였고, 그 시기에 중국, 베트남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 철강업체가 민영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철강업계의 민영화는 1980년대 이전 30%에서 1993년 이후 70%를 상회하였습니다.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우리나라에서도 피고는 1980년대부터 정부의 민영화 대상 공기업 1호였는바, 이는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피고의 경영실적이 안정적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았으며, 시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988.에 주식 일부를 국민주로 공개한 후에도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초기에도 공기업 민영화가 추진되었으나, 피고를 수용할 만한 민간기업이나 자본도 많지 않았지만,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는 그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후1994. 5.경 피고로부터 경영진단을 의뢰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다른 공기업과 달리 "지배주주가 없는" 민영화를 바람직한 민영화 방법으로 제안하였지만, 이는 "경제력 집중 억제", "주인 있는 민영화"라는 당시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았고, 게다가 민영화 이후의 경영방식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피고의 민영화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기존의 이사회 활성화 방안,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를 나누는 방안, 안정적 주주로 대주주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98. 7. 3. 기획예산위원회가 11개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밝히면서 피고의 민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 민영화를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기업 민영화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추진한 데에는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의 신인도를 높이고, 해외자금을 유치하여 국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경제시책의 성격도 강하였던 것입니다.

정부의 민영화 조치로 피고는 일본의 신일본제철, 미국의 유에스스틸, 프랑스의 유지노사실로, 영국의 브리티시스틸 등 세계 유수의 철강사들과 같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 - mail@wooyun.co.kr

이 소유와 경영이 엄격히 분리된 선진국형 민영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민영화 추진과정

1998. 12. 14. 정부지분 3.14% 전량과 한국산업은행 지분 23.57% 중 2.73%를 DR(예탁증서, depositary receipt)로 매각하는 것으로 민영화가 시작되었는바, 당시 DR 매각대금은 4,205억 원(3억 4,500만 달러)으로 국내주가에 25.6%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는 피고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피고의 DR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자 IMF의 관리 하에 있던 한국의 국가신용도 회복에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해인 1999. 7. 22.에도 한국산업은행 지분 8%가 DR로 매각되었고, 같은 해 12. 4. 한국산업은행이 나머지 지분 12.84%를 장외 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민영화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시장가격이 매각 희망가격인 15만7000원보다 낮게 형성되어 매각에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9. 12. 28.과 2000. 6. 16.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씩 한국산업은행 지분을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민영화를 지원하였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은 2000. 6. 21. 피고의 잔여지분 6.84%를 ADR(미국예탁증권,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형태로 뉴욕증시에 발행하였으나 역시 미국 증시의 침체로 실패하였고, 결국 정부는 한국산업은행의 나머지 지분 매각을 무기한 연기하였습니다. 알짜 기업인 피고의 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 피고를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하여 특정 재벌이나 개인의 소유한도를 제한하였던 정부는 2000. 9. 28. 피고를 공공적 법인에서 제외함으로써 피고 주식에 대한 동일인 소유한도 3%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날 한국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산업은행 지분 4.6%가 DR로 매각되고, 10. 4. 피고가 나머지 2.24%를 자사주로 매입함으로써 3년에 걸친 민영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민영화 당시 주주분포(2000. 10. 4.자 기준)[1]

주주	시중은행	일반주	자기주식	우리사주	외국인
비율(%)	8.0	23.94	19.07	0.05	48.9

나. 피고가 신일본제철과 제휴하게 된 과정

피고는 통합과 대형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던 서구 철강업계에 공동대응함으로써 상호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1998. 11.경 신일본제철(NSC, 이하 "NSC" 라고만 합니다)은 상호 주식을 취득, 보유하고 기술협력 · 설비공급 · 조업 · 건설 · 엔지니어링 부문 등의 우호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NSC는 피고 주식의 1%를 취득 · 보유하고, 피고는 NSC가 취득한 금액만큼 NSC 주식을 취득 · 보유하기로 한 위 합의에 의하여 NSC는 1998. 12. 피고 주식 전체의 0.1%를 588만 5,000달러에 매입하였고, 피고는 1999. 6. 22.과 23. 두 차례에 걸쳐 NSC 주식 60만 1,000주를 141만 달러에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2000. 8. 2. 피고의 유상부 회장은 NSC의 지하야 아키라 사장을 만나 앞으로의 기술개발, 제3국에서의 사업, 정보통신기술,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하고, 아울러 상호 지분 보유 한도를 당시까지 피고의 동일인 지분보유 한도인 3%까지 늘리기로 하는 전

[1] 피고의 외국인 지분비율이 70%를 육박하다가(을 제2호증의 1 인터넷기사검색결과 참조) 최근에는 약간 하락하여 2006. 9. 11.자 기준으로 61.52%(총주식수:87,148,472주 / 외국인취득수:53,526,592주)에 이르고 있습니다.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 - mail@wooyun.co.kr

략적 제휴에 조인함으로써 상호 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측 10명, NSC측 12명으로 구성된 Steering Committee(이하 "SC" 라고만 합니다) 회의가 2000. 10. 17. NSC본사에서 처음 개최된 이래 2006. 7. 14.까지 양국에서 번갈아가면서 17회나 열렸던 것입니다.

피고는 위와 같은 NSC와의 전략적 제휴에 따라 기술분야에서는 NSC 전 설비를 벤치마킹하여 품질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Strip Cacting[2] 개발기술 통합, 미완기술 공동개발로 상용기술 조기완성 기반을 구축하였고, 원료분야에서는 중장기 세계 원료 수급전망 공동연구 실시, 지분 보유 광산 확장 지원 및 석탄광산 조업 통합에 합의하였으며, 해외 신규 광산 공동투자 등의 성과가 있었고, 엔지니어링 부문에서는 직접융용자원화시스템(Direct Melting system for Waste Recycling) 장기기술협약을 체결하는 성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

자고로 세계 철강업계는 합종연횡을 거듭하고 있고, 심지어 2006. 6. 26.경에는 세계 1위 철강업체인 미탈스틸과 2위 업체인 아르셀로가 합병하여 거대 공룡업체가 탄생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1 인터넷기사검색결과 참조), 이에 따라 세계철강업계에서는 업체간 합종연횡이 더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피고도 세계 철강업계의 위와 같은 흐름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피고와 엇비슷한 규모인 NSC와의 기술협력과 정보교환을 활발히 하고 있는 것뿐이고, 이러한 일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는 비단 피고뿐만 아니라 동국제강 등 우리나라의 다른 철강업체들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생존을 위한 어쩔 수

[2] 쇳물을 연속으로 주조(Casting)를 하여 바로 강판을 생산하는 기술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없는 선택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을 제2호증의 2 인터넷기사검색결과 참조).

그렇다면 피고가 NSC와 전략적 제휴에 나서게 된 것은 결코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나아가 이제 외국인 주주비율이 60%가 넘을 정도로 글로벌 기업화한 피고에게 생존을 위한 NSC와의 전략적 제휴를 더 이상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는 결코 원고들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2호증의 1, 2 각 인터넷기사검색결과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2통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 - mail@wooyun.co.kr

2006. 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촌

담당변호사 윤 용 섭

담당변호사 장 영 기

담당변호사 오 정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34부 귀중

法務法人 律 村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3동 944-31 섬유센터 12층
TEL : (02) 528-5200 송무팀FAX : (02) 528-5296
E-mail : lit－mail@wooyun.co.kr

준 비 서 면

사 건 : 2006 가합 42288 호 위자료 청구등

원 고 : 여 운 택 외 139

피 고 : ㈜ 포스코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소장의 청구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로 그 근거를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들인 원고들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와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마땅 할 금원에 대해 피고가 사용함으로 인해 그 귀속을 방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책임 부분입니다.

(1) 먼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는 개인들의 인격권은 보장이 되며 이를 침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원고들은 일제 침략 전쟁의 피해자로서 현재 가해자인 일본과 가해 기업을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단체에 가입하고 수십년 이상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최근 국내에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작년에는 한일협정문서가 전면 공개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어 원고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대상이 누구인지가 현재 규명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 피해자의 인격을 회복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행위로 이에 대해 방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우리 법제상 명백히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특히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죄와 배상을 받으려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삼일운동으로 성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권리 혹은 법률상 보호받은 가치로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의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졌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조리상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배려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를 주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2) 그 다음 두번째는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피고의 책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만약 청구권 자금에 대해 피해자들이 권리를 가지고 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원이라면 그 귀속을 방해한 행위는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2005년 전면 공개된 한일협정문서에 의하면 청구권 자금의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관계자들은 원고들의 피해에 대해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 진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에 대해 이를 거부하며 우리 손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 중 강제동원 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망피해자 1인당 1,650달러, 부상자 1인당 2,000달러, 생존자 1인당 200달러 합계 3억 6천 4백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요청한 사실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 달러의 자금이 건네왔고 이러한 자금 중 상당액이 피고에 의해 사용되었습니다. 이 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이라면 그 귀속을 방해한 것은 당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원고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금원 인지 등에 대해 협상당시의 문서등 관련 자료를 통해 입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이러한 재판의 시작에 앞서 전쟁 피해자에 대한 일본 및 중국의 최근 참고 재판례를 들며 본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준비 서면을 제출합니다.

즉 1998. 4. 27. 야마구치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에서는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국회가 언제 어떤 입법을 해야 하는가 혹은 입법을 하지 않는가의 판단은 국회가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그 통제도 선거를 포함한 정치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회의원의 입법 행위는 입법의 내용이 헌법의 일의적 문언에 위반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당해 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으로 평가를 받지만, 입법 부작위가 일본국 헌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가치에 관계되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가배상법의 위법이라 할 것이고, --- 일본국 헌법하에서 의회제 민주주의에선 입법부도 구속하는 원리가 기본적 인권이므로 적어도 헌법의 근간이 되는 인권의 침해가 개인에게 생기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이고 동시에 재판소의 헌법상 고유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이며 당해 인권 침해의 중대성과 그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헌법상 입법 의무가 발생하고 국회가 입법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입법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합리적 기간이 경과해도 이를 방치하는

상황적 요건하에서는 입법 부작위에 의한 국가 배상이 인정될 수 있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나치의 만행에 준하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내각관방장관의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담화가 나온 1993.8.4. 이후에 시급하게 특별 입법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화 후 3년이 지난 1996.8.말까지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은 당해 입법부작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이라 인정된다며 장래 입법에 의한 피해 회복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각 30만엔의 배상을 명하였던' 사례가 있습니다. 위 재판례에 의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 및 배상을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작위 의무는 일본 헌법에서도 유래되고, 그 의무 중 입법 제정의 이행 시점을 내각관방장관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일본 정부의 책임이 공식 인정되는 때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위 재판례는 보수적인 상급심에서 뒤집혀 지기는 하였으나 일본 입법부에 강한 영향을 끼쳐 현재 일본의 국회에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06.8.23. 중국 장쑤(江蘇) 성 난징 시의 쉬안우(玄武) 구 법원은 난징대학살로 7명의 가족을 잃은 중국인 생존자 샤수친(夏淑琴 • 여 • 77) 씨가 대학살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책을 출간한 일본인 2명과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60만 위안(약 1억9232만 원)을 배상하고 판매된 책들을 모두 회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 및 중국에서도 일제 침략전쟁의 피해자들의 인격권 회복과 관련되어 헌법 규범에 따라 법적 의무를 국회의원에게까지 인정하거나 거액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재판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피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침략전쟁을 긍정하고 미화하려는 군국주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세력들의 정치적 의도를 법률적으로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6.8.23. 중국의 재판례는 전쟁피해자들의 명예 및 인격권에 대한 가해 행위를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피해 구제를 위해 막대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에서 우리 사안과 흡사합니다.

3. 피고는 귀 원에 2006. 9. 11.자 접수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제휴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인격권 침해를 한 여러 가지 가해 행위 중 하나에 불과 합니다. 원고들과 같은 전쟁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그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언제부터 무슨 이유로 피고에게 어떤 요구를 어떤 근거에서 하게 되었고, 이를 무시당한 것이 어떤 상황적 이유에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였는지에 대해 정확한 사실 인정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사회상규상 요구되는 충분한 배려를 통해서도 부득이하게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제휴를 한 경우와 아무런 배려도 없이 원고들의 요구를 무시하여 모욕에 가까운 명예 감정을 침해 받는 인격권 침해를 초래한 경우와는 그 위법성이 현저히 다른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가)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은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여운택 등은 1997.12.24. 손해배상을 구하여 일본에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이 되던 중에 일본의 재판지원회의 회원들과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협의 도중 재판이 진행 중인 2000.8.2.경 당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신소재 개발등의 기초적인 기술개발,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사업등에 대한 포괄적 제휴를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은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로 구성이 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서울지부, 일본의 일본제철징용자재판지원회등의 명의로

당시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의 회장 앞으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파트너로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해서 과거 침략의 역사 청산과 강제연행문제에 대해 진정한 해결을 추진하도록 건의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나) 당시 피해자들은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배려는 하여 줄 것으로 믿었고 그 이유는 비록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가 기업으로서 제휴기업의 선택등 경영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이나 청구권 자금 중 무상자금의 10.2%, 유상자금의 44.3%를 사용하여 성립한 대표적 청구권 자금 사용 기업으로서 법상으로나 조리상으로 당연히 일제침략전쟁에 적극 가담하고서도 현재까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제휴 관계를 맺을 때에는 원고들과 같은 일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배려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믿었던 것 입니다.

(다) 그래서 다시 원고들은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인 회원들과 피고 회사 서울사무소 앞에서 '제휴에 앞서 과거청산이 우선이다' 라는 슬로건을 걸고 거듭 피고의 제휴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묻고 제휴에 앞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강제동원 피해문제를 제기하여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고, 피고 포스코 담당자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라)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요구에 대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고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동행한 재판지원회의 일본인들과 함께 피고를 방문하여 가해자인 신일본제철주식회사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구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지키려던 피해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특히 일본인 재판지원회 회원들의 앞에서 이러한 무시를 당하여 심한 모욕감과 아울러 명예 감정을 침해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 그 후 오오사카 지방재판소는 2001.3.27. 원고들에 대해 강제노동은 피해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국제법상으로는 원고들에게 직접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국내법상의 청구는 원고들의 권리가 별개의 회사인 피고 신일본제철에 승계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을 하였습니다.

(바) 그러나 영업 재산이 동일하고, 이사나 임원도 그대로였으며, 종업원의 고용관계도 일본제철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고 회사 마크도 계속하여 사용하였음에도 별개 회사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고, 특히 도쿄지방법원에 계류중이었던 당시 피고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의 재판에서 유골이 반환되지 않은 한국인 당사자에게는 200만엔, 유골이 반환된 당사자에게는 5만엔을 지급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위령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를 하였음에도 별개의 회사이며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판결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 일본에서의 재판이 그야말로 원고들이 알 수 없는 상식에 반하는 일본 국내의 사정을 이유로 패소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은 더욱 절망을 하기도 했고 피해자들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피해자들이 단결하여 종합적으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싸워야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일본제철주식회사에게 자신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지를 국내로부터 강력히 전달하여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하여 이러한 필요성에서 볼 때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제휴하고 있는 피고를 통해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 생각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았고 계속 이를 무

시하여 왔습니다.

(자) 더 나아가 기술제휴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피고가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식마저 보유한다는 소식을 재판을 지원하는 일본인들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피가 거꾸로 도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 왜냐하면 피고 포스코는 청구권 자금을 통해 설립된 회사로 포스코 스스로가 일제시대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현재 싸우고 있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과거 청산이 없이 제휴를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 문제를 무시하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행위를 두둔하고 동조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이고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는 것은 신일철주식회사의 발전에 명운을 걸어 함께 전범기업으로서 생사를 같이 한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카) 그러나 피고 포스코는 증인등의 요구를 외면하고 기술 제휴에서 더 나아가 지분의 상호 공유마저 깊게 하여 유착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그 지분의 비율 마저 확대한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현재 피고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지분을 2.2%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위 지분을 가진 회사로서 일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배려와 그 책임을 다하기를 원고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현재 홋카이도에 있었던 일본제철 무로랑 제철소에서 일하던 사망한 한국인 유골 3구가 홋카이도의 사찰에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피고 회사는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피고의 회피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가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

다. 이러한 피고 회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하여 일제 피해자들은 최근 청구금자금 10대 수혜기업 및 일본 전범 10개 기업을 선정한 적이 있는데 피고 회사가 수혜기업의 1위로 선정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게 일본의 전범기업으로 선정된 신일본제철주식회사와 제휴를 하여 전범기업을 두둔하고, 조상들의 유골을 돌려 받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무시하는 반민족기업 1호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행위들이 우리 헌법 질서 하에서 혹은 사회상규상으로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헌법 질서의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라야 할 기업들의 차원을 넘어서 피고 스스로 인정하듯 일제 피해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 진 기업이 피해자들의 이러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전혀 무시하여 원고들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고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가 이번 재판에서 명확히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청구권 자금의 귀속 방해에 대한 부분은 차회 준비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2006. 9.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준 비 서 면

사 건 : 2006 가합 42288호 위자료 청구

원 고 : 여 운 택외 139

피 고 : ㈜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본건 청구 원인 중 두번째 사유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에 대해 피고가 그 귀속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책임 부분 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정부가 한일청구권자금을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최초 투자 당시에는 아직 피고가 설립되기도 이전이기 때문에 청구권 자금의 유용에 대해 공모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고,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정부가 위 청구금 자금을 원고들에게 분배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나 청구권 자금은 1966년을 제1차 년도로 하여 1975년까지 10차례에 걸쳐 도입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피고 회사의 설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태준의 진술등에 의하면 피고 회사 설립및 운영에 즈음하여 부족한 외자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 청구금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판단하여 (소위 하와이 구상) 청구금 자금 유용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적극적 제안을 하고 그 결과 사용한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따라서 청구권 자금의 유용에 대해 공모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피고의 변명을 백 번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만약 위 자금이 피해자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금원이라면, 피고가 가사 설립되기도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유용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설립 이후 10년에 걸쳐 들어온 청구권 자금의 성격을 볼 때 설립 이후 청구금 자금의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방해한 고의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2) 청구권 자금이 과연 원고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금원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을 달리 논의하겠습니다.

2.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학설과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의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청구권 협정이라고 함)' 제1조 및 제2조의 조항입니다.

(1) 청구권 협정 제1조에 의하면 일본국은 한국 정부에 무상 3억불, 유상 2억불에 해당하는 생산물 및 용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권 협정 제

2조 1항에 의하면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권리,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간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2항에 의하면 위 규정을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 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 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 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65. 12. 17. 법률 제144호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 및 경제 협력에 따르는 대한민국등의 재산권에 대한 조치법(이하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으로서 청구권 협정 제2조 3항에서 말하는 재산, 권리, 이익에 대해서는 1965. 6. 22.에 원칙적으로 소멸된 것으로 한다고 처리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되어 일본측 사법부의 판단 중 최근에 와서 유력해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 원고 여운택등이 신일본제철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의 오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에 의하면 재산권조치법에서 말하는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일본제철에 대한 미지급임금채권, 강제연행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채권, 사죄문교부청구채권 및 변호사 비용 청구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며 피해자들의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은 재

산권조치법의 적용에 따라 1965. 6. 22.로써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 8. 26. 발표된 우리 정부의 한일회담 문서공개대책기획단의 청구권 협정 관련 법적 효력 발표에 의하면 위 오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결과는 달리 청구권 협정이 기본적으로 식민 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한일양국간의 민사적 재정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강제동원 과정의 가혹행위등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한국의 사법부의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한 건도 없는 실정입니다)

(3) 이러한 일본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결국 청구금 자금은 채무자에 의한 변제 혹은 대물변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결국 청구권 자금은 원고와 같은 피해자들에게 귀속이 되어야 할 성격으로 보이고, 1961. 5. 10.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린 청구권 관련 제13차 회의록을 보면 피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되어 양국의 교섭단의 회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일본측은 '미불금에 대하여 일본측은 언제라도 미불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고,--- 미불금은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본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정부측은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논의만으로 보면 결국 우리 정부도 청구금 자금에 대해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성격의 금원 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갑 제7호증에 의하면 1964. 4. 7.경에도 한국 정부의 청구권 총액중 민간인 관련 부분은 이것이 엄연한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정부가 민간인을 위하여 재산 청구권 행사를 대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었음이 판명이 되고 있고, 2005. 8. 26. 발표된 우리 정부의 한일회담 문서공개대책기획단의

발표문에 의하더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전체 무상 자금 중에는 이러한 강제동원 보상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여 위 근거들 만에 의하여 보면 결국 피고의 무상자금 사용은 결국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그 귀속을 방해한 것이었음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됩니다.

(4) 따라서 본건 판결을 통해 우리 사법부상 최초로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밝혀 일본 정부 및 기업 등의 가해자를 상대로 원고들과 같은 피해자들이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고 어떤 종류의 권리가 소멸되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인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2006. 9.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건번호 2006가합 42288호 위자료청구

원 고 여 운 택 외 139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1. 사실조회 할 곳 : 대한민국과일본국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귀 기관은 한일수교회담의 문서를 공개함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고, 이어 2005. 1. 한일수교회담의 일부 문서를, 2005. 8. 그 나머지 문서를 전부 공개하였고, 전부 공개에 즈음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피해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제 피해자들이 ㈜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인 바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조회를 하니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 조회할 내용

(1) 귀 기관은 언제 어떤 근거로 설립을 하였고, 존속 기간 및 관장 업무는 무엇인가요,

(2) 귀 기관은 2005. 8. 26.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과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민관공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3) 귀 기관은 한일회담 문서공개시 한일 청구권 협정이 기본적으로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한일 양국간 민사적 재정적 채권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데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채권 및 미불임금의 지불 및 공탁금 청구 채권은 어떤 성격의 채권이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이 된 범위는 어느 것인지,

(4) 한일 수교 회담 공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와 협상을 하면서 사망자 1인당 1,650불, 부상자 1인당 2,000불, 생존자 1인당 200불을 보상으로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 금액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불과 유상 2억불과 관계는,

(5) 귀 기관의 2005. 8. 관련 문서를 전부 공개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 3억불 가운데에는 강제 동원 보상금이 상당부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6) 현재 일본 은행에는 1억 6779만 엔의 공탁금과 4735만 엔의 유가증권의 공탁금이 조선인 노무자의 몫으로 공탁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일제 피해자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7) 만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면 이 부분의 공탁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할 것인지 여부,

(8) 현재 일본에서는 일제 동원 피해자들의 임금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여 가입케 한 후생연금과 관련되어 후생연금탈퇴수당금은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성은,

(9) 2002. 11. 19. 오오사카고등재판소는 일본제철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 원고 여운택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한일 청구권 협정 및 재산권조치법의 각 문언등을 보면, 재산권 조치법1항 1호에서 말하는 「일본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채권」에는, 한국국적을 가지고 한국에 거주하는 항소인들의 일본제철에 대한 미불임금채권, 강제연행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사죄문교부채권 및 변호사비용청구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항소인들의 일본제철에 대한 채권은 한일청구권협정 2조의 3의 재산, 권리, 이익에 해당하고, 재산권조치법의 적용에 의해 1965년 6월 22일 소멸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日韓請求権協定及び財産権措置法の各文言などにかんがみると，財産権措置法１項１号にいう「日本国又はその国民に対する債権」には，韓国国籍を有する韓国に居住する控訴人らの日本製鐵に対する未払貸金債権，強制連行の不法行為による損害賠償請求債権，謝罪文交付請求債権及び弁護士費用請求債権が包含されている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したがって，控訴人らの日本製鐵に対する債権は，日韓請求権協定２条３の財産，権利又は利益に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該当し，財産権措置法の適用によって昭和４０年６月２２日をもって消滅したものと解するのが相当である。”

고 판시하였는바, 귀 기관의 2005. 8. 법적 견해 발표와 상이점과 공통점은 어떠한지 만약 상이할 경우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여부,

를 각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 -

2006. 10. .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사 실 조 회 보 완 신 청 서

사건번호　2006가합 42288호　　위자료청구

원　　고　여 운 택 외 139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 같이 사실조회보완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사실조회 할 곳 : 대한민국과일본국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귀 기관은 한일수교회담의 문서를 공개함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고, 이어 2005. 1. 한일수교회담의 일부 문서를, 2005. 8. 그 나머지 문서를 전부 공개하였고, 전부 공개에 즈음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피해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제 피해자들이 ㈜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인 바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2006. 12. 8. 자 사실조회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 질의 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 조회할 내용

1. 2006. 8. 26. 한일회담문서 전면공개 당시의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의 명단,

2. 강제동원 피해부분이 무상자금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나 금액을 알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무상자금을 제공한 일본 정부에게 그 금액에 대해 확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향후 확인할 계획은,

3. 유상자금의 경우 강제동원 피해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본다면 그 이유는,

   참고로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 晋三) 수상은 2006. 12. 20. 일본 참의원의장에 대하여 '무상자금을 포함하여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루어진 경제 협력이 양국민간의 재산,권리,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병행해서 이루어 졌다'(첨부자료 2006. 12. 14. 후쿠시마 의원의 질의서 및 이에 대한 아베 신조 수상의 답변서 참고)고 답변하였는데 여기서 경제 협력이란 유상자금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귀 기획단의 의견은 어떠하며 아니라고 보는 경우 그 근거는,

4. 미수금에 대하여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이 된 사안이라는데 1945년 8월 당시 미수금 1엔으로 살 수 있었던 금의 량은 얼마였는지,

5. 후생연금 탈퇴수당과 관련하여 한일청구권협정과 별개로 일본이 취급을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하고 있다는데,

(1) 본 소송의 원고 여운택의 경우 2004. 11. 일본사회보험청으로부터 후생연금탈퇴수당을 받은 바 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2) 당시 원고 여운택이 받은 금액은 60년전 액면가 그대로인 316엔 (한화 약 3,000원)이었고 위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60년 전에는 소 6마리를 살 수 있었다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3) 귀 기관에서는 위 수당과 관련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4) 한편 정부차원에서 일괄하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도 일본측이 지급하고 있는 위 수당을 수령하기 위해 그 동안 어떤 행위를 하였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5)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피해자 지원 정부 입법에서 위 후생연금 탈퇴수당은 제외되어 있는 지 만약 제외되어 있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6. 정부가 추진 중인 정부 입법에 의하면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의 경우 위로금 지급대상 제외 되어 있고, 그 이유로 생환 귀환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1) 그러나 2002. 11. 19. 오오사카고등재판소의 원고 여운택에 대한 판결내용에 의하면 사실상 강제동원 생존자가 가지는 모든 청구권이나 권리등이 소멸되어 일본에서는 권리 주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2) 생환 귀환자에 대한 책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측에 요구할 의사가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지,

(3)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과 관련되어 체결 당사자가 달리 해석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하면 중재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절차를 거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언제 행사하려 하는지,

7. 정부입법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부족한 일제 피해자들을 위해 대일청구권자금을 사용한 기업들을 포함하여 재단 혹은 보상기금을 설립하여 일괄해결할 방안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였고 향후 할 계획은 있는지 여부,

를 각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06. 12. 14. 후쿠시마 의원의 질의서 1통
1. 아베신조 수상의 답변서 1통

2007. 03. .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사 실 조 회 보 완 신 청 서

사건번호 2006가합 42288호 위자료청구

원 고 여 운 택 외 139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 같이 사실조회보완을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사실조회 할 곳 : 대한민국과일본국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번지

『귀 기관은 한일수교회담의 문서를 공개함으로 인해 발생할 법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었고, 이어 2005. 1. 한일수교회담의 일부 문서를, 2005. 8. 그 나머지 문서를 전부 공개하였고, 전부 공개에 즈음하여 한일청구권협정의 법적 효력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라 '일제강점하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안)'을 입법예고하여 현재 피해자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제 피해자들이 ㈜ 포스코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인 바 청구권 자금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2007. 4. 6. 자 사실조회회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완 질의 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2. 조회할 내용

1. 귀 대책기획단이 2007. 4. 6. 재판부에 제출한 회신에 의하면, 한일청구권 협정의 해석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해 규정되어 있는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의한 중재 등을 통한 신속한 해결은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것인바,

(가) 이러한 소극적 태도로 인하여 원고들 특히 생환자의 경우에는 한일양측으로부터 구제의 길이 막혀져 있는 바, 위 사실을 알고 있는지.

(나) 만약 원고들이 보상을 받을 길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2. 귀 대책기획단의 회신에 의하면 유상자금의 경우 차관으로써 추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들어온 자금이므로 무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하나,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지.

만약 한일청구권협정이 한일 어느 측 혹은 양측에 의해 파기될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금액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지.

3. 극히 최근인 2007. 4. 27. 일본 최고재판소는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니시마츠건설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하면서 중일공동선언에 의해 피해자들의 실체적 권리는 소멸된 것은 아니나, 일본의 재판소에서 재판상 소구할 권능이 소멸되었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단을 하였는 바 (판결문 및 그 번역본을 첨부함), 우리 정부의 2005. 8. 발표한 법적 견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4. 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강제동원에 대한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등은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실체적으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가) 귀 대책기획단의 경우 위 책임 기업 등에 의한 자발적 의무 이행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나) 특히 본건 계쟁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신일본제철주식회사의 주주이며 청구권 자금을 사용한 대표적 기업인 포스코에 대해 어떤 협조를 요구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5. 일본은 1998년 한일협정의 일부인 소위 한일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1999년 우리 정부와 신어업협정을 맺었다고 하는 바,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의 일부인 한일청구권협정을 파기하여 일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가해자인 일본 정부 및 기업으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를 각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최고재판소 판결문및 번역문 각 1통

2007. 05. .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사 실 조 회 신 청 서

사건번호　2006가합 42288호　　위자료청구

원　　고　여 운 택 외 139

피　　고　주식회사 포스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고자 아래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 아　　래 -

1. 사실조회 할 곳 :

삼성전자주식회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2. 조회할 내용

귀 사는 일본의 도야마 후지코시(不二越)사와 제휴 관련으로 일제 피해자인 강제연행 후지코시 소송 원고 및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로부터 항의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해 배려하여 줄 것을 요청 받고 그 후 이에 대해 성실히 대응을 한 바 있어 위 사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SAMIL 법무법인 삼 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영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1. 귀 사는 2004. 2. 24.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로부터 방문을 받고 어떤 요구사항을 접수 받았나요.

2. 귀 사는 2004. 5. 12. 강제연행 후지코시소송원고단으로부터 어떤 요청을 서면으로 받았나요.

3. 그 후 귀 사는 위 요청들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어떤 방침을 세웠나요.

4. 귀 사는 2004. 5. 18.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에게 후지코시사의 관계자들을 면담한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경위는 어떠하였나요.

5. 당시 귀 사는 유족회가 중단을 요구한 바와 같이 공동개발계획을 완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나요.

6. 아울러 귀 사는 태평양전쟁 당시 부당하게 고통을 받으신 분들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여 현재 진행중인 송사가 유족회원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빨리 종결이 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회신을 한 사실이 있나요.

7. 귀 사는 일제피해자들의 요구에 성실히 배려하기 위해 일본의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한 사실이 있나요.

8. 당시 귀사의 누가 후지코시 본사를 방문하였고 후시코시사의 누구를 만나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나요.

9. 2004. 6. 11. 귀 사가 후지코시사에게 한 요청 내용은 무엇인가요.

10. 당시 귀 사는 후지코시사에 귀사가 가지고 있는 민족기업으로서의 위상과 사회적 기대를 설명하였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11. 아울러 당시 귀 사는 후지코시사가 유족회와 현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귀사와의 비즈니스는 어려울 것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나요.

12. 당시 후지코시사는 위 통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3. 기타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명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

를 각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 -

2006. 10. .

위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 일

담당변호사 최 봉 태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10 영광빌딩 5층 대표전화. (02) 3476-0031 FAX. (02) 3476-5071